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자료출처 / 대한민국 관보 제13,293호
자료정리 / 출판홍보과

❖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근간인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전력설비의 신·증설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수요를 보다 조기에 예측하여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10만㎾와트 이상의 대용량 전기수용자가 일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사용예정일 2년 전까지 전기사용을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예정일 3년까지 통지하도록 함(제21조 제1항).

나. 송·변전 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사용전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설비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중전선로중 토폭공사가 완료된 때와 송·변전설비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

다. 유통업소, 노래연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건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

의 점검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함(제51조 제1항).

라. 감독관청 또는 유통업소 등의 허가전자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첨부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기수용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실시기관이 전기안전점검을 한 후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제2항).

마.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만㎾트 미만으로서 1,500㎾트 미만의 설비에 대하여는 전기기사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는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소정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며, 따로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동일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제57조 별표 8 및 제58조 제3항).

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와 용량간 가중치 단계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 점검 소요시간이나 난이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해 점검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부위 및 가중치 단계를 현재의 4단계에서 1단계로 하고 가중치도 합리적으로 조정(제59조 제2항 및 제3항).

◎ 통상산업부령 제3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6년 4월 23일

통상산업부장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1만킬로와트”를 “10만킬로와트”로 한다.

제6조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제7호 나목중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을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 사용예정일 3년전

제32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에 관한 수리권 허가서 사본

제35조 제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제40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5호(종전의 제4호) 가목중 “수전설비”를 “설비”로 하며, 동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송·변전설비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변전설비중 공사계획에 의한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제51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2조 제2항 제3호의 건물에 설치된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와 단락주점, 유홍주점, 복욕장 및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제55조의 제목중 “방법”을 “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거나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한 경우로서 점검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검실시기관은 전기안전점검획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별·소·개

제58조 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설비	규 모	기술인력	자격기준
발전설비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50만킬로와트 미만~1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1만킬로와트 이상	전기 및 기계분야 각2명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1명 전기 및 기계분야 각1명	동일분야 기능사 1·2급 또는 기사 2급 이상이거나 동일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송·변전설비 또는 동설비 를 관할하는 사업장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50만킬로와트 미만~1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1천킬로와트 이상	전기분야 3명 전기분야 2명 전기분야 1명	동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전기수용설비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5천킬로와트 이상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2천킬로와트 이상	전기분야 3명 전기분야 2명 전기분야 1명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 수한 자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중 “750킬로와트”를 각각 “700킬로와트”로 한다.

② 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이하 “대행사업체”라 한다) 및 개인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8의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규모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별표 8의 2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 이하이어야 한다.

제61조 제2항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3조 제4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본문,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제2항 본문, 제26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2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호, 제39조 제3호, 제46조 단서·제1호 내지 제3호,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전단·제2항, 제56조 제2항 전단, 제63조 제1항 본문, 제6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7조 제1항·제4항 및 제69조 제1항·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 발전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소	별표 3의 1과 동일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다)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기타 점검사항란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 전기분야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기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

[별표 8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사고(고장)보고사항의 제10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

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제11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0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에 관한 수리권 허가서 사본

별지 제33호 서식 및 별지 제34호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서 사본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내지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내지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내지 별지 제35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7호 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67호 서식 및 별지 제68호 서식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내지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내지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및 별지 제47호 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별지 제29호 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전정과)”를 “통상산업부”로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통상산업부”로 하며,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9호 서식 및 별지 제50호 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전운과)”를 각각 “통상산업부”로 한다.

별지 제67호 서식 및 별지 제68호 서식 중 “참조 : 전력운영과장”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안전공사 및 대행업체의 각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개인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별표 6]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46조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기력 · 원자력 · 내연력 · 가스터빈 발전소 및 수력(양수)발전소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 (2) 가스터빈 · 보일러 ·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 · 발전기계통 및 수압관로	2년마다 2월전 5월후 1년마다 2월전 5월후 4년마다 2월 전후	1호 및 2호의 전기 설비로서 사용압력 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

신 법 소 개

구 分	대 상	시 기	비 고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기력·원자력·내연력 및 가스터빈 발전소(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제외)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발전기계통 포함) (2) 가스터빈(발전기계통 포함)·보일러·열교환기(다만, 보일러 및 열교환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받는 것은 제외)	2년마다 2월 전후 1년마다 2월 전후	1호 및 2호의 전기 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병원·공연장·호텔·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예식장·지정문화재·단란주점·유총주점·목욕장·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이 면제된 중소기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외에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월 전후 2년마다 2월 전후 3년마다 2월 전후	자가용 송·배전선로를 포함.

[별표 8의 2]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 및 가중치(제59조 관련)

전 기 설 비 규 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체	개 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체	개 인
저 압	용량 50킬로와트 미만	85	60	0.7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75	46	0.8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66	40	0.9
고 압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60	35	1.0
	용량 100 이상~200킬로와트 미만	50	30	1.2
	용량 200 이상~300킬로와트 미만	46	27	1.3
	용량 300 이상~400킬로와트 미만	30	17	2.0
	용량 400 이상~500킬로와트 미만	25	15	2.4
	용량 500 이상~600킬로와트 미만	20	—	3.0
	용량 600 이상~700킬로와트 미만	15	—	4.0
	용량 700 이상~800킬로와트 미만	12	—	5.0
	용량 800 이상~900킬로와트 미만	10	—	6.0
	용량 900 이상~1천킬로와트 미만	8	—	7.5